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궁역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8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2일

발 의 자: 남궁역, 고광민, 김경훈,
김길영, 김영철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김혜영,
남창진, 박 석, 박영한,
서상열, 신동원, 신복자,
이경숙, 이병운, 이숙자,
임춘대, 홍국표, 황유정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옥상녹화 조성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누수, 균열 등에 안전위험 사항에 대하여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여 옥상녹화 조성 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안전위험 및 대수선시 사업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(안 제11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안전위험 및 대수선에 따라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옥상녹화의 유지·관리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1조(옥상녹화의 유지·관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안전위험 및 대수선에 따라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(옥상녹화의 유지·관리)제5항 중 옥상녹화 조성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누수, 균열 등 안전위험 사항에 대하여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계분석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